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3 선고 2017가단5180481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 2018. 8. 20.

판결 선고 2018. 9. 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4,800,182원 및 그중 44,131,563원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7. 5. 17. 접수 제208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2010. 7. 28., 보증기간을 2011. 7. 27., 보증한도를 81,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이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르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았고, 이 사건 보증계약의 조건이 수회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보증기한이 2017. 6. 23., 보증한도가 48,450,000원이 되었다.

3) 피고 회사는 2017. 6. 24.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7. 8. 17.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44,131,5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구상금 채권의 보전비용으로 534,279원을 지출하였고, 위약금 134,340원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정한 약정 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나.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한편, 피고 B는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5. 17.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이하 '이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B의 재산 상태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시가 3억 5,750만 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으로 622,725,684원 가량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¹⁾.

표

채권자	채무 금액(원)	기준일
농협은행	264,800,000	2017. 5. 17.
경기신용보증재단	129,809,168	2017. 5. 17.
삼성카드 주식회사	10,616,516	
송도새마을금고	217,500,000	2017. 5. 17.
합계	622,725,68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경기신용보증재단, 삼성카드 주식회사, 송도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에 대한 회신,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²⁾.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4,800,182원(= 대위변제금 44,131,563원 + 보전비용으로 534,279원 + 위약금 134,34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44,131,56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8. 1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7. 10. 24.까지는 약정 손해금률인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2007다21245 판결 등).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한 것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2017. 8. 17.이고 이때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이후이지만, 이미 그 전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었고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당시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 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와 같이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C의 사해 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 C이 2015. 3. 13.경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2017. 4.경부터 피고 B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7. 5. 26.까지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던바,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2017. 5. 26.경까지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은 피고B가 2017. 4.경부터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당시 피고 B의 자력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병직

1) 피고 C은 위 표에 기재된 피고 B의 채무 중 채권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송도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는 보증금채무이므로 피고B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는바, 피고 B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채무들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 B가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판단되므로, 피고 B의 보증금채무를 위 피고의 소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C은 피고 B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채무는 이후 주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피고 B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재산상태와 실질적으로 피고 B의 재산인 위 피고의 처 D 명의의 예금액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연대보증인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채무자의 재산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은 독단적 주장에 불과하고, D 명의의 예금액이 피고 B의 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